

2012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vol 5

‘주폭’은 사회가 만들어낸  
‘또다른 나’

2012. 10. 11.

국회의원 박 남 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예결산특별위원회)

## 목차

<b>1. 주폭은 사회가 만들어낸 ‘또다른 나’</b> .....	<b>1</b>
(1) 복잡한 사회구조 .....	2
(2) 한국사회의 직장문화 .....	3
<b>2. 경찰과 주폭의 ‘끝나지 않은 전쟁’</b> .....	<b>4</b>
<b>3. ‘1,000명’만 구속시키면 세상이 달라질까?</b> .....	<b>14</b>
(1) 커지는 인권침해 가능성 .....	15
(2) 약자에게만 가혹한 표적수사 .....	17
(3) 치료와 재활에는 무관심한 경찰 .....	19
<b>4. 해외에서는 주폭에 어떻게 대응하나?</b> .....	<b>24</b>
(1) 프랑스 .....	24
(2) 영국 .....	24
(3) 미국 .....	25
(4) 일본 .....	26
<b>5. ‘주폭’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b> .....	<b>30</b>
(1) 주폭 재범을 예방하는 치료프로그램 필요 .....	31
(2) 주취자 응급구호체계 개선시급 .....	34

## 1. 주폭은 사회가 만들어낸 ‘또다른 나’

- 국세청의 ‘2010년 주류 출고 동향’에 따르면, 국민 1인당(19세 이상 성인 기준) 소주 66.6병(360ml 기준), 맥주 100.8병(500ml 기준), 막걸리 14.2병(750ml 기준)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음

[주요 주종별 1인당 연간 음주량(병)]

주 종 (기준용량, ml)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막걸리(750)	6.2	6.2	6.3	9.1	14.2
맥주(500)	102.2	106.8	109.8	105.1	100.8
소주(360)	72.4	72.0	74.4	67.8	66.8
위스키(500)	1.7	1.9	1.7	1.4	1.4

[출처 : 통계청, 2011년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19일 발표한 ‘2011년 지역건강통계’에 따르면 고위험 음주량(한 번의 술자리 당 남-7잔, 여-5잔 이상) 역시 14.9%에서 18.2%로 증가함
- 고위험 음주 비율이 높게 나타날수록 음주운전 등 범죄로 인한 각종 사고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차성민 한남대 법학과 교수가 치안정책연구소와 함께 2007년 5대 범죄를 토대로 산출한 사회적 비용은 모두 13조 1,618억원(2009년 발표 자료)에 달함
-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 2조4,070억원, ▲강도 823억원, ▲강간

5,958억원, ▲절도 2조3,649억원, ▲폭행 7조7,115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음. 이는 2007년 GDP(국내총생산)의 0.86%에 해당함

-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서울에서 3년간 살인 40%, 강도 13%, 강간이나 성추행 30%, 절도 9%, 폭행 36%가 음주 뒤에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 서울지방경찰청 조사를 사회경제적 비용 산출 조사에 적용시킬 경우 만취한 술꾼이 저지른 범행으로 우리 사회가 치른 비용은 ▲살인 9,628억원, ▲강도 107억원, ▲강간 1,795억원, ▲절도 2,128억원, ▲폭행 2조7,761억원으로 모두 4조1,419억원으로 추정
- 이처럼 무분별한 음주문화는 즐기는 것을 넘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이 전면전을 선언한 ‘주폭’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1) 복잡한 사회구조

- 사회·경제적인 구조가 급변하면서 이에 적응하는 구성원들의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했음. 실제로 2010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가 77.1%가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술을 찾게 되는데, 술은 이성을 무디게 만들고 순간적으로 근심, 불안, 초조에서 벗어나게 해 과거에는 ‘망우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음

- 숙취음료 광고 중 “사표를 던지자 내일 아침까지만..”으로 시작하는 광고, “귀하는 오늘 직장에서 세 번의 퇴직충동을 참아냈기에..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표창장, 시원함의 끝 드라이 피니시”라는 맥주 광고는 ‘마음껏 마셔보자’라는 뜻으로 한국인의 음주문화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광고카피라 할 수 있음

## (2) 한국사회의 직장문화

- 한국사회의 직장이 가지는 특성 중의 하나가 음주가 주를 이루는 회식과 접대문화임. 음주를 위한 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노래방 등 다양한 다중이용업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음
- 술은 초면의 어색함을 감소시키고 긴장을 늦추면서 인간의 호트러진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특성을 지니므로, 새로운 고객 또는 사업상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접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함

“직장인 스트레스 요인 1위 ‘이것만 없어도..’”

(2012.9.21 / 대전일보)

- 직장인 408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라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직장인들의 58%가 ‘야근’ 때문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상사에게 억울하게 혼날 때(38%), 동료와의 대인관계(30%), 상사가 나를 부를 때(14%) 등이 뒤따랐다. 또한 스트레스가 올라갈 때 나타나는 신체 반응으로는 두통(50%), 뒷목 당김(28%), 순간적인 속쓰림(28%), 심박수 증가(27%) 등을 보였다.

직장인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음주(36%)를 꼽았으며 폭식(33%), 흡연(14%) 등이 뒤를 이었다.

## 2. 경찰과 주폭의 ‘끝나지 않은 전쟁’

- ‘주취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라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음
  
- 주폭은 술에 취하여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선량한 서민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등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법범을 의미
  - ‘조폭’이 ‘조직폭력배’의 약칭으로 사용되듯이 ‘주폭’은 술의 힘을 빌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폭력배’를 의미하는 행위자 개념이고, ‘주취폭력’과는 달리 사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서 단순한 주취소란자가 아닌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주취폭력배를 말함
  
- 해당 단어는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0년 초 충북경찰청장 시절 처음 사용한 말임. 김용판 당시 충북경찰청장이 술에 취해 관공서와 지구대 등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주폭’으로 규정하고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했었음.
  
- 뿐만 아니라 김 청장은 ‘주폭’을 특허청에 특허를 내기도 했음
  - 2011년 4월 ‘주폭’이란 단어에 대한 상표권·서비스권을 특허청에 출원하고 2012년 3월 특허를 받음. ‘주폭과의 전쟁’에 대한 성과로 충북청은 작년 9월 기획재정부 주최 국가생산성대상에서 종합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

### [주취자와 주폭]

구 분	단순 주취자	무질서형 주취자	범죄형 주취자	주폭
정 의	단순히 음주로 정신이 없는 자 (만취자)	음주 후 고성방가, 방뇨 등으로 타인에 불쾌감을 주는 자 (주취소란자)	술에 취해 타인재물을 손괴, 폭행하는 등 범죄 저지르는 자 (범죄자)	상습적, 고질적인 범죄형 주취자 (중범죄자)
적 용	보호조치	통고처분·즉결심판	형사처벌	척결

- 경찰은 주폭은 술에 취하여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선량한 서민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반사회적·반인격적 형태의 사회적 위해범으로 보고있음
- 최근 3년간 살인, 강도 등 5대 주요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 비율은 2010년은 전체 중 31.7%, 2011년에는 31.2% 및 2012년 9월 현재 32.1%로 감소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5대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 현황]

(단위 : 명)

		전체	살인	강도	강간/ 추행	절도	폭력	공집
'10년	전체	138,820	320	1,652	5,278	28,372	100,479	2,719
	주취	44,071	127	269	1,578	2,537	37,560	2,000
	비율	<b>31.7</b>	<b>39.7</b>	<b>16.3</b>	<b>29.9</b>	<b>8.9</b>	<b>37.4</b>	<b>73.6</b>
'11년	전체	131,316	291	1,382	5,149	24,421	97,338	2,735
	주취	40,967	108	165	1,574	2,299	34,819	2,002
	비율	<b>31.2</b>	<b>37.1</b>	<b>11.9</b>	<b>30.6</b>	<b>9.4</b>	<b>35.7</b>	<b>73.2</b>
'12. 1~9월	전체	95,636	168	735	3,584	17,336	71,484	2,329
	주취	30,724	58	67	1,251	1,616	25,977	1,755
	비율	<b>32.1</b>	<b>34.5</b>	<b>9.1</b>	<b>34.9</b>	<b>9.3</b>	<b>36.3</b>	<b>75.4</b>

\* 5대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 현황

- 서울지방경찰청은 2012년 5월 17일 「주폭 척결 종합 수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중에 있으며 각 경찰서별로 「주폭 수사전담팀」 편성해(31개팀 132명) 찾아가는 입체적·종합적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주폭 척결 지원팀 회의 개최 현황]**

연번	일시	참석자	회의 주제 및 회의 내용
1	'12.5.22 10:00~ 12:00	지방청 : 형사과장 등 10명 경찰서 : 수사·형사과장 62명, 주폭 수사전담팀장 31명	「수사·형사과장 및 주폭 수사전담팀 WorkShop」 - 주폭척결에 대한 의지 제고, 공감대 형성 - 충북청 우수 운영·수사사례 공유
2	'12.6.1 10:00~ 12:00	지방청 : 형사과장 등 10명 경찰서 : 주폭팀장·팀원 108명	「주폭 수사전담팀 실무 WorkShop」 - 수사기법 설명, 검거 우수사례 발표 - 주폭 척결활동 추진 발전방안 논의
3	'12.7.13 10:00~ 11:30	지방청 : 청장 등 12명 경찰서 : 형사과장 31명, 주폭 수사전담팀장 31명	「형사과장·주폭팀장 간담회」 - 효과적인 수사기법 소개, 검거 우수사 례 공유 - 주폭 척결 홍보강화방안 논의
4	'12.8.29 14:00~ 15:00	지방청 : 폭력계장 등 4명 경찰서 : 5대폭력(주폭) 담당 자 31명	「5대폭력(주폭) 담당자 실무 간담회」 - 5대폭력(주폭 포함)(평가 관련 평가기 준 설명) - 5대폭력 우수사례 공유, 추진 활성화 방안 논의
5	'12.9.7 15:00~ 17:00	경찰청 : 수사국장 등 2명 지방청 : 수사부장 등 11명 경찰서 : 현장경찰관 97명	「5대폭력 '붐' 지속화를 위한 현장 간담 회」 - 5대폭력 척결 추진 당위성 설명 및 성 과 점검 - 세부 정책 추진방향 토론, 우수 사례 발표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 5월 10일부터 주폭 단속을 시작한 이후 9월 30일까지 검거·구속된 주폭은 모두 429건으로 440명에 달하고 있음.

- 이외에 검찰조사에서 불구속된 자들은 35명 정도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예의주시 중임
- 9월 말 기준으로 출소한 주폭은 총 61명(13.9%)으로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46명, 75.4%)하였으며, 벌금형 선고 4명, 공소기각·보석·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등 11명임
- 그 중 3명(재범 1, 보복범죄2)이 출소 후 재범을 저질렀음.
  - 보복범죄 2건 - 1건 수사 중(강북), 1건 구속(성동) / 재범 1건 구속(구로)

[주폭 단속 시작 후 일자별 검거현황]

5월			6월			7월			8월			9월		
日	일계	누계	日	일계	누계	日	일계	누계	日	일계	누계	日	일계	누계
10	4/5	4/5	1	1/1	43/44	1	6/6	151/158	1	5/5	250/258	1		
11			2			2	4/4	155/162	2	4/4	254/262	2	3/3	347/356
12			3	4/5	47/49	3	4/4	159/166	3	4/4	258/266	3	4/4	351/360
13	1/1	5/6	4	8/9	55/58	4	6/6	165/172	4			4	2/2	353/362
14			5			5	3/4	168/176	5	3/3	261/269	5	4/4	357/366
15	2/2	7/8	6			6	3/3	171/179	6	3/3	264/272	6	4/5	361/371
16	2/2	9/10	7	11/11	66/69	7			7	2/2	266/274	7	2/2	363/373
17	2/2	11/12	8			8	3/3	174/182	8	3/3	269/277	8		
18	2/2	13/14	9			9	4/4	178/186	9	3/3	272/280	9	2/2	365/375
19			10	11/11	77/80	10	2/2	180/188	10	2/2	274/282	10	3/3	368/378
20	1/1	14/15	11			11	2/2	182/190	11			11	3/3	371/381
21	5/5	19/20	12	5/5	82/85	12	4/4	186/194	12	3/3	277/285	12	4/4	375/385
22			13	7/7	89/92	13	2/2	188/196	13	5/5	282/290	13	5/5	380/390
23	1/1	20/21	14	4/4	93/96	14			14	4/4	286/294	14	3/3	383/393
24	6/6	26/27	15	2/2	95/98	15	2/2	190/198	15	8/8	294/302	15		
25	2/2	28/29	16			16	3/3	193/201	16	3/3	297/305	16	3/3	386/396
26	1/1	29/30	17	3/3	98/101	17	4/4	197/205	17			17	5/5	391/401
27	3/3	32/33	18	5/5	103/106	18	4/4	201/209	18			18	3/3	394/404
28	3/3	35/36	19	8/9	111/115	19	4/4	205/213	19	4/4	301/309	19	4/4	398/408
29	3/3	38/39	20	6/6	117/121	20	3/3	208/216	20	4/4	305/313	20	5/5	403/413
30	3/3	41/42	21	7/7	124/128	21			21	4/4	309/317	21	4/4	407/417
31	1/1	42/43	22			22	4/4	212/220	22	5/6	314/323	22		
			23			23	6/6	218/226	23	3/3	317/326	23	5/5	412/422
			24	6/7	130/135	24	6/6	224/232	24	4/4	321/330	24	3/3	415/425
			25	2/2	132/137	25	4/4	228/236	25			25	5/5	420/430
			26	4/5	136/142	26	4/4	232/240	26	3/3	324/333	26	4/4	424/434
			27	5/5	141/147	27	2/2	234/242	27	4/4	328/337	27	4/5	428/439
			28	4/5	145/152	28			28	4/4	332/341	28	1/1	429/440
			29			29	3/3	237/245	29	4/4	336/345	29		
			30			30	4/4	241/249	30	5/5	341/350	30		
						31	4/4	245/253	31	3/3	344/353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 주폭에 의해 피해를 본 2,131명을 분석한 결과, 직업군은 음식점 운영이 480명(22.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웃가족, 상인, 주점 순 이

있음. 특히 여성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63.1%, 303명)으로 비추어 볼 때, 남성에 비해 중·장년의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 음식점·상가·주점이 주폭의 주요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음

### [주폭 피해자 직업군 현황]

직업	계(명)	음식점	이웃가족	상인	주점	경찰	공무원	회사원	의사약사	운전사	이미용	경비원	기타
계	2,131	480	321	278	286	211	62	140	22	33	24	21	253
남성	1,126	177	156	127	115	210	44	87	9	32	3	21	145
여성	1,005	303	165	151	171	1	18	53	13	1	21	·	108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 [주폭 피해자 연령별 현황]

연령	계(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계	2,131	44	186	324	562	700	215	86	14
남성	1,126	22	99	216	314	339	92	41	3
여성	1,005	22	87	108	248	361	123	45	11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 검거된 주폭 440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무직(341명, 77.5%)으로 평균전과는 22.3범이며 그 중 주취로 인한 범죄는 17.3범에 달했음(전과의 77.6%)
- 이들을 직업별로 분류하면 341명이 무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 기사 등이 뒤를 이어, 대부분이 사회취약계층으로 나타났음

### [주폭 직업군 현황]

계(명)	무 직	노 동	회사원	기 사	배달원	노점상	고물수집	경비원	기타
440	341	44	8	13	6	7	7	2	12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 무직자 341명 중 45명은 노숙자(남성 44, 여성 1)였으며, 평균 전과는 27.3범이며 주취범죄 평균은 21.1범(77.3%)으로 일반 주폭에 비해 5범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주폭의 전과현황]

계(명)	1~10범	11~20범	21~30범	31~40범	41~50범	51~60범	61~70범	71~80범	81범 이상
440	106	124	101	58	27	13	8	·	3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 전과 범죄사실 외 주폭 1명당 평균 범죄건수는 11.8건으로 주폭 440명이 총 5,198건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형별로는 업무방해가 2,083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022건(19.7%), 갈취 936건(18.0%) 순으로 집계되었음

### [주폭 범죄건수 현황]

계(명)	1~10건	11~20건	21~30건	31~40건	41~50건	51~60건	61~70건	71~80건	81건 이상
440	289	103	23	7	5	1	2	3	7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 [주폭 최종별 현황]

계(건)	업무방해	폭 력	갈 취	사 기 (무전취식)	공무방해	모 욕	재물손괴	특가법 (보복범죄)	기 타
5,198	2,083	1,022	936	255	225	209	162	68	238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 또한 주폭은 4·50대의 중·장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경찰이 주폭과 주취를 구분하는 기준을 ‘상습성’에 두고 있어 연령대가 어릴수록 상습범일 가능성이 낮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동안 경찰에 검거된 주폭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음

### [주요 검거사례]





연 번	개 요
1	<p><b>[주민들의 탄원으로 구속된 주폭 1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1월부터 상습적으로 만취한 채 주민센터를 찾아가 “몸이 아픈데 장애인 판정을 해주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주변 약국·병원·분식점 등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한 주폭(공무집행방해 등 27범)에 대해</li> <li>-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체포, 69회에 걸쳐 음주소란으로 112신고 접수된 사실 확인 및 주민 153명의 연명부 제출 받아 피의자 구속</li> </ul>
2	<p><b>[최다 범죄(119회) 2인조 주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숙생활을 하면서 10여년 간 만두집, 통닭가게, 식당 등 15군데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며 음식대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하며,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비가 적다”며 행패소란한 2인조 주폭(폭력 등 8범, 강도상해 등 10범)에 대해</li> <li>- 첩보입수, 상가 주민 상대 탐문수사, 업무방해·갈취·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사실 119회 구증, 주민 120명 연명부 제출 받아 긴급체포 후 구속</li> </ul>
3	<p><b>[재래시장 영세업 영업방해 주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술에 취해 시장 일대 영세업소에 찾아가 업주 및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거부하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영업방해한 주폭(업무방해 등 26범)에 대해</li> <li>- 첩보입수, 수사 착수하여 상인 6명을 상대로 영업방해한 사실 20건 확인,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술 거부하거나 피해일시를 특정하지 못한 피해자 13명의 탄원서 제출받아 사전영장 발부, 구속</li> </ul>

4	<p><b>[교회 예배방해 주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동네 교회 및 상가 등에서 행패 및 폭행을 일삼고 업무방해한 주폭(폭력행위 등 12범)에 대해</li> <li>- 첩보입수, 수사 착수하여 교회 예배방해, 존속폭행, 업무방해 등 범죄사실 21건 확인, 지역 주민 69명의 탄원서 제출받은 후 파주 소재 000교회에서 수사사실을 알고 도피중인 피의자 긴급체포, 구속</li> </ul>
5	<p><b>[유흥가 상습갈취 주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방·주점 등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거나 현금을 갈취하고, 상습으로 허위 신고하며, “징역을 살다 나왔다”며 협박한 주폭(공무집행방해 등 53범)에 대해</li> <li>- 주폭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피해자 있다는 첩보입수, 수사 착수하여 100여차례 이상 불법영업 등 허위신고 사실 확인, 노래방·주점 등 탐문, 20명에게 53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 갈취, 협박 보복범죄 14건, 사기 3건 인지, 체포영장 발부받아 검거, 구속</li> </ul>
6	<p><b>[병원 업무방해 기초생활수급대상 주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정에 필요한 진단서를 받기 위해 병원과 주민센터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대상자 선정 후에도 “약을 빨리 달라”며 병원 업무를 방해한 주폭(강도상해 등 17범)에 대해</li> <li>- 첩보입수, 수사착수, 병원·주민센터·마트 등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 범죄사실 14회 확인, 피해자 17명 탄원서 제출받아 체포영장 발부, 구속</li> </ul>
7	<p><b>[공원의 상습폭행 주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평구 물빛공원 일대에서 술에 취해 상습으로 아무 이유없이 폭행을 일삼고 지역주민에게 행패를 부리며 불안감 조성한 주폭(흥기상해 등 26범)에 대해</li> <li>- 신고접수, 현행범체포 후 주민상대 폭행사실 목격 및 흥기사용 여부 구증, 상습적으로 부모·동생을 폭행, 상해를 가한 사실 확인, 구속</li> </ul>
8	<p><b>[가정폭력 주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술에 취해 상습으로 만 4세의 딸과 69세의 노모를 폭행하고 칼을 들이대고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주폭(공무집행방해 등 16범)에 대해</li> <li>- 현행범체포 후 아동복지센터 등 주변 사람들 진술 청취, 구속</li> </ul>
9	<p><b>[자칭, 권투선수 출신 주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술자리 합석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버릇이 없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시멘트 바닥에 넘어트려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주폭(공무집행방해 등 19범)에 대해</li> <li>- ‘권투선수 출신 조폭으로 경찰에 잡혀가도 풀려난다’며 주민들이 폭행을 당하여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 확인, 아파트 노인회장·동 대표 등 9명으로 “소란스러워 못 살겠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 제출 받아 사전영장 발부, 구속</li> </ul>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 서울지방경찰청은 주폭척결 홍보를 위해 주폭척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해 인터넷 매체 외 지하철·야구장 등에서 방영하고, 가수 에일리, 작곡가 최영호씨의 협조로 로고송을 제작하기도 함. 또한 입체적 홍보를 위해 캐릭터·엠블럼·웹툰 등을 제작했음

[주폭척결 4종 캐릭터]

			
적당이	술dog이	해롱이	폭탄이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작한 주폭 홍보영상]



### 3. '1,000명'만 구속시키면 세상이 달라질까?

-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함. 그러나 최근의 서울지방경찰청이 주력하고 있는 '주폭과의 전쟁'은 '실적주의'에 급급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약자에게 가혹한 표적수사로 흐르고 있는 실정임
  
- 급기야 현직 경찰 간부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주취 폭력'척결과 공원 안전 대책에 대한 비판을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음
  - 서울의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황모 과장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문제 해결자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윤리나 복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개입을 적극화하려는 최근의 경향은 우려할 만하다”, “경찰이 음주문화 개선에 앞장선다든지 공원 내 노숙행위를 제지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비판 글을 올림
  
- 따라서 주폭 문제가 경찰이 나서서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발생함
  
- 그러나 지난 6월 9일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7~8개월만 기다려 보십시오. 서울에서 주폭 1,000명만 잡아들이면, 세상이 확 달라질 겁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주폭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 1,000명 구속, 세상이 정말 달라질까?

-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리 없다”임. 주폭으로 구속된 자들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만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지 교육·재활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출소 후 다시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농후함. 경찰은 이런 자들을 또다시 집어넣기만 하는 기계적 대처만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치료·재활시스템이 뒷받침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주폭 척결’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절대 빈곤, 실업 등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면 주폭 등 생활안전 범죄도 줄어든다”며 “전시효과를 노린 일회성 수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음

### (1) 커지는 인권침해 가능성

- 서울지방경찰청은 “주폭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주폭의 전과와 범행횟수에 비추어 그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고, 경미한 처벌 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저지르고, 상습성으로 인해 서민들 상대 재범의 우려가 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주폭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임
- 검거한 주폭 440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전과는 22.3범이며 그 중 주취로 인한 범죄는 17.3범으로 전체 전과의 77.6%를 차지, 1인당 평균 범행 건수는 11.8건으로 폭력·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갈취·협박 등의 범죄를 계속·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었음
- 서울시경찰청의 무리한 주폭 수사는 결국 술을 마시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혜정 변호사는 “경찰 조사는 이미 포착된 특정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기 위한 것인데, 새로운 혐의를 찾기 위해 묻고 다니는 것은 과잉단속”이라며 “구속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사는 가장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여죄를 파헤치는 것은 경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함
- [사례1.] 서울 경찰서 주폭수사전담팀장 : “술 마시고 싸우는 등 경범죄로 체포돼 경찰에서 조사받고 풀려난 사람들 가운데 전과 10범 이상인 이들을 선정해 평소 주취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이 탐문조사를 통해 구속한 주폭은 전체 440명 중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2012년 9월 30일 기준)
- 이 과정에서 서울시지방경찰청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주폭 관련 탐문조사 대상자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음

**[탐문조사를 통해 구속된 주폭 월별 현황]**

월	총계	유형별 검거 현황	
		탐문조사(첩보입수)	현행범체포(112신고)
5	42건 43명	7건 7명	35건 36명
6	103건 109명	38건 42명	65건 67명
7	100건 101명	44건 44명	56건 57명
8	99건 100명	40건 41명	59건 59명
9	85건 87명	24건 26명	61건 61명
총계	429건 440명	153건 160명	276건 280명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주폭 관련 탐문조사 대상자에 대한 기준'**

- 서울청에서 척결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주폭은 상습적·고질적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히 술에 취해 우발적·일회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자는 대상으로 하지 않음
- 따라서 각 지역에서 주폭으로부터 상습적·고질적인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탐문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2) 약자에게만 가혹한 표적수사**

-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대로 이들이 검거한 주폭의 78%가 모두 무직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함. 따라서 이들은 형사처벌 보다 사회복지 서비스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임
- 서울 용산구에서 쪽방 주민과 노숙인을 지원하는 동자동사랑방 엄병천 대표는 “노숙인들은 주거도 일정하지 않고 거리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쉬운 단속 대상이 된다”며 “경찰이 실적 경쟁을 하다보면 단속이 쉬운 노숙인들을 대량 구속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함
- [사례1.] 서울 지구대 소속 경찰관 : “동네 쉼터에 부랑자로 보이는 사람들 3명 정도가 늘 술을 마시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위협을 주고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주폭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 [사례2.] 서울 구로구의 한 마트 주인에게 행패를 부려 체포된 노숙인 이아무개(48)씨를 구속하기 위해 경찰은 이씨 주변을 샅샅이 뒤져 14건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확보했다. 한달 전 이씨가 진단서를 받기 위해 드나든 병원에 찾아가 간호사들한테서 이씨가 행패를 부렸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동사무소 직원들한테서는 이씨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연장해달라며 행패를 부렸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결국 이씨는 구속됐다.

- [사례3.]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다 체포된 홍아무개(48)씨의 경우, 강서경찰서 주폭수사전담팀은 열흘 동안 이웃들에게 홍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고 묻고 다녔다. 이런 방식으로 12건의 범죄 혐의를 추가 확인한 뒤 홍씨를 구속했다.
  
- [사례4.] 한밤에 술에 취해 시비를 벌이다 연행된 뒤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발길질까지 한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가 이튿날 아침 풀려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을 성토했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김아무개(47)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마포구 서교동 거리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인근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으며 발길질을 했다. 경찰은 “김씨가 신분·주거가 분명하고, 관련 전과도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사례1,2,3과 사례4를 대하는 경찰의 각기 다른 조치는 약자에만 가혹한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함

### (3) 치료와 재활에는 무관심한 경찰

-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2일 「대한병원협회 서울시병원회」와 주폭 치료·재활 등 관련 MOU 체결로 권역별 협력병원을 지정하고 전문의 상담기회 제공
- 서울시병원회가 지정한 협력병원과 MOU 체결이후 총 56건의 인계건수가 발생했으나 7개의 협력병원 중 4개의 경우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병원도 있음

#### [대한병원협회 서울시병원회 지정 협력병원]

연번	병원명	관할서	MOU 체결	인계건수
1	건국대학교병원	광진	6.11	40건
2	을지병원	노원	6.26	-
3	선한이웃병원	노원	8.30	-
4	강동성심병원	강동	6.15	15건
5	명지성모병원	영등포	8.29	-
6	엔젤병원	영등포	7.16	1건
7	청량리정신병원	동대문	8.24	-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 8월 13일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MOU를 체결해 주폭 척결 홍보 및 상습 주취자를 대상으로 상담·치료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홍보
  - 카톨릭 알코올 사목센터 실장이 서울경찰청 소속 600여명 경찰관 대상 “건전한 음주문화”를 주제로 교육한 바 있음
  - 앞으로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음주문제자 대상 상담·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경찰을 위한 음주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 등을 위한 전문강사 지원시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힘

- 뿐만 아니라 경찰은 주취자의 보호·치료를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공공의료기관 내 「주취자 One Stop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임
- 범죄 및 사고에 노출된 주취자 등의 보호·치료 등을 위해 서울경찰청·서울시·서울시정신보건센터 등이 참여해 5개 공공의료기관내에 설치해 합동으로 운영 중임
- 주취자 One Stop 응급의료센터를 설치 이후 2개월 동안 1,386명을 5개 병원에 인계함. 이는 일일평균 22.4명임(개소당 4.5명)

**[주취자 One Stop 응급의료센터 운영실적]**

(기간 : '12.7.31 ~ 9.30)

구분	총계	국립중앙 의료원	서울 의료원	보라매 병원	동부 시립병원	적십자 병원
인원	1,386명	496명	466명	347명	33명	44명
일평균	22.4명	8.0명	7.5명	5.6명	0.5명	0.7명
비율	100%	35.8%	33.6%	25.0%	2.4%	3.2%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 경찰은 만취주취자 등 발견시 병원으로 적극 인계 및 3개병원에 상주 근무를 하며, 2개병원은 요청시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임
- 경찰 배치 3개소(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보라매병원) / 경찰 미 배치 2개소(동부시립병원, 적십자병원)
- 서울시는 치료비 미납자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며, 공공의료기관은 치료 및 보호와 정신병원 등을 연계해주며, 정신보건센터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함
- 그러나 실제 경찰이 주취자의 재활·치료·교육을 위해 자체예산을 들

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어 말로만 '재범 방지 및 사회복지기  
유도'라고 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음

[논쟁] 경찰력 동원한 음주통제, 이대로 좋은가

(2012.7.19 / 한겨레)

- “통제보다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

요란한 ‘주폭척결’ 약자만 단속  
술 마실 수밖에 없는 사정은 외면  
형사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술에 너그러운 문화 때문에 범죄를 키우고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입는단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주폭 척결’을 들고나오자 <조선일보>는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서울경찰청은 69일 만에 200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기증 나는 속도다.

공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부채질을 해대니, 경찰은 더욱 과감해졌다. 공원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을 추방하겠다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해수욕장에서 음주도 없애겠다는 강릉경찰서는 음주문화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인 계도를 하겠다는 게 잘못 알려졌지만, 그게 경찰이 해야 할 일인지는 의문이다. 상습 음주운전을 하면 아예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등의 법률적 근거가 취약한 대책도 연일 쏟아지고 있다. 강력한 형사처분과 요란한 캠페인이 반복되고 있다.

‘주폭 척결’로 구속된 사람들의 전과기록을 합치면 5041범, 평균 전과는 25.2범이란다. 하지만 주폭 200명이 벌인 범행횟수 총 2693건 중에 폭력은 397건(14.7%)뿐이다. 대부분 무전취식, 업무방해, 그도 아니면 예비군 훈련 불참 따위였다. 하긴 전과 25범을 채우려면 과태료나 매기면 그만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잔뜩 쌓여야 가능하다. 다른 사람을 25번이나 해친 사람을 너그럽게 봐줄 정도로 한국의 형사사법기관들은 무기력하지도 만만하지도 않다. 구속된 사람의 80%는 직업이 없었고, 나머지도 변변한 일거리가 없었다. 약자여서 더욱 술에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경찰은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 이들을 구속했지만, 막상 효과는 별로 없다. 기껏해야 교도소에 갇혀 있는 동안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게 전부다. 이러서는 출소 뒤에 다시 술을 마시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술기운을 빌려 평소와 다른 거친 언동을 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고약하지만, 그들에게도 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들이 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모진 삶을 꾸려가기 힘드니 자포자기 상태에서 술이라도 마

시는 사람들도 있고,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 환자들도 있다. 그렇지만 술에 의존하는 원인을 살피지 않으면 <조선일보>와 서울경찰청 식의 대응은 곁돌 수밖에 없다. 200명을 넘어, 서울경찰청장이 공언한 것처럼 1000명을 구속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직업 없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치료가, 가족관계가 붕괴된 사람에게는 꼼꼼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요란한 구속실적을 자랑하는 서울경찰청과 달리, 부산경찰청은 3년 전부터 ‘주폭 치료 및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과는 확실했다. 알코올 중독 치료 실적이 쌓이는 만큼 술로 인한 범죄 발생도 줄었다. 역시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 요란하지만 실속 없고, ‘선량한 시민’도 얻을 게 없는 ‘주폭 척결’의 깃발은 이제 그만 내려라. 시민을 계도의 대상으로나 여기는 오만한 생각도 접어라. 술에 의지해 사는 사회적 약자들만 잔뜩 잡아넣고는 우리 사회가 안전해진 것처럼 호들갑 떠는 일도 그만해야 한다.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다면, 이제는 차분하고도 꼼꼼하게 제대로 된 처방을 만들어보자. 물론 그 일은 경찰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주도해야 하겠지만.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酒暴단속 잘 한다, 성과주의는 경계해야

(2012.6.1 / 한국일보)

- 서울 경찰청이 ‘주취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20일이 지났다. 동네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퍼붓고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주취폭력범들에게 시달려오던 주민들은 엄정한 법 집행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술 먹고 행패부리는 주폭자들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2010년 한 해 동안 주폭자 신고는 36만건에 달했다. 경찰지구대 업무의 대부분이 술 취한 사람들 뒤치다꺼리여서 경찰력의 단순 경제적인 손실만도 연간 약 500억원이라고 한다. 살인 등 주요 범죄 상당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지고 있다. 지난해 범죄발생 현황에 따르면 살인 사건의 37.1%, 강간·추행 사건의 30.6%, 폭력 사건의 35.7%는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일어났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는 73.2%나 된다.

더욱이 주폭자들이 노리는 대상은 주로 노점상, 미용실, 다방 등 영세한 가게들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가게에서 물건을 그냥 집어 가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공짜로 먹고, 주민들에게 예사로 폭행을 휘두른다. 그런데도 신고해 봤자 피해액이 경미해 경범죄로 풀려 나온 뒤 다시 괴롭히기 때문에 냉가슴만 앓아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경찰의 엄정대응 방침은 서민 보호와 치

안복지 차원에서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과거 경찰의 집중단속 때면 빚어졌던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취임 직후 서울 31개 경찰서에 일제히 ‘주폭수사전담팀’을 신설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다 보니 인원부족으로 조직폭력배 담당 팀이 떠맡기도 하고 경찰서마다 전과자 리스트를 작성해 검거에 활용하는 등 벌써부터 과잉단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음주폭력 피의자 대부분이 알코올중독자로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재활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경찰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취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술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

## 4. 해외에서는 주폭에 어떻게 대응하나?

### (1) 프랑스

- 공공장소에서의 주취상태 자체를 범죄로 규정함과 동시에 공공장소에서 주취자를 발견시 유치장 형식의 주취자보호실에 강제 보호조치하고 있음
  - 관련법률 : 「주점 및 알코올중독규제법」, 「공중위생법」
- 공중위생법과 동법 시행령은 주취자의 판단기준으로서 '주취상태의 명백성'과 '공공장소'라는 이중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프랑스 법원은 주취상태의 명백성에 대해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며 오감에 의해 누구나 확인 가능한 외형적 사실'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 주취자의 보호주체는 경찰관이며, 경찰관은 공공장소에서 만취상태로 발견된 자를 경찰관서 또는 유치장 형식의 주취자 보호실에 구인하여 유치할 수 있으며, 보호는 정신을 찾을 때까지로 규정되어 있음
- 장구사용에 있어서도 경찰관은 현행법으로 체포되어 타인 또는 자기에 위협한 행위를 하거나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갑이나 족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2) 영국

- 영국은 주취소란과 관련해 「2001년 형사사법 및 경찰법」에 의거하여

- 주취소란자, 음주금지 장소에서의 음주자 등을 처벌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만취자에 대해 주류를 판매하거나, 술집에서 주취소란을 방임한 주류업자 처벌 및 금지장소에서의 경찰의 음주제지권한 및 압수권한도 경찰에게 부여되어 있음
- 주취자는 경찰관, 소방관, 구급대가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데 주취자를 의료기관에 후송하며, 범죄 관련 주취자는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하여 경찰서에 구금하고 응급 후송된 경우에는 퇴원 이후에도 계속 유치구금이 필요하면 경찰공의의 진단 하에 구금 및 수사할 수 있음
- 또한 법원은 알코올의존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알코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조치는 최소한 6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함

### (3) 미국

- 미국은 대다수의 주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 및 주취상태를 「형법」에 의거해 처리하고 있음. 알코올중독자 처리는 보건의료 차원에서 접근하여 비범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류통제 법규와 알코올중독자 관리와 관련한 법률을 가지고 있는 주들이 다수 있음
- 워싱턴 주에는 「알코올, 주취자, 약물중독자 처리법」이 있는데,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알코올이나 주취자들에게 음주로 인한 형사처벌이 아닌, 이보다는 생산적인 사회 일원으로서 일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능한 기금 내에서 중독치료를 제공하려는 것임
- 일리노이 주에서도 「알코리즘과 다른 약물중독 및 의존법」 등이 있음

- 미국에서 주취자 처리는 경찰관과 응급구조팀이 담당하고, 단순주취자는 본인의 동의하에 경찰관서나 공공치료시설, 주취자의 자택으로 후송하고 있음. 만취자는 경찰에 의해 48시간 이내의 유치 및 응급치료를 위한 공공치료시설에 후송 후에 치료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
- 특히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만취자는 응급치료를 위한 긴급감호를 하고 배우자, 의사, 병원장 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만취자에 대한 감호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취자는 최대 48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으며, 형사입건이 필요한 경우 수갑, 족쇄 등의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구체적인 주취자 관련 제도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우려가 있는 주취자 또는 명정자(술에 취한 자)의 경우 응급치료를 위한 긴급감호를 하고 ▲배우자, 후견인, 친인척, 인증의사, 병원장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위해가능 주취자에 대한 감호처분(강제입원)도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며 치료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음

#### (4) 일본

- 일본은 주취자 관련 법률로서 「술에 취하여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 1961년 6월 1일 제정되었으며, 일명 “명정자규제법”이라고 함
- 경찰관은 공공장소에서 거칠거나 난폭한 언동을 하고 있는 경우, 상

황을 고려하여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명정자나 만취로 인해 우려 및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를 경찰서, 병원, 정신병자수용시설, 구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찰서에서 보호조치를 할 경우는 유치장과 별도의 자해 및 부상방지 시설을 구비한 주취자보호실에 보호하거나 경시청의 주취자보호센터에서 보호해야 하며, 24시간을 넘길 수 없게 되어 있음
- 해당 법은 술에 취한 자가 공공의 장소 또는 승용물에 있어 공중에게 폐를 끼치는 등의 거칠거나 난폭한 언동을 한 때에는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경찰관의 제지에 따르지 않고 공중에 현저한 폐를 끼친 주취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장소에서의 주취 소란 및 질서 위반자에 대해 일반경찰작용법이나 개별 법률에 의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들 국가는 주취자에 대한 처벌과 강제조치가 강력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알코올중독에 대해서는 응급치료 등 긴급구호시설의 보호나 알콜치료 명령 등 치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 주취자 보호를 위해 경찰 또는 의료기관이 별도의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각국의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기간 및 보호시설]

국 가	보호조치 기간	보호시설	근거법률
일 본	24시간 이내	주취자보호실	명정자규제법
독 일	24시간 이내	치료·구호 시설	통합경찰법
프랑스	주취해소시까지	파출소 또는 보호시설	공중위생법시행령
영 국	36시간 이내	유치, 후송치료	경찰직무규정
미 국	48시간 이내	유치, 후송치료	통합알코올중독 및 주취치료법
캐나다	24시간 이내	별도보호시설	주취자유치법
호 주	8시간 이내	경찰서	주취자 관리 및 보호법
우리나라	24시간 이내	주취자안정실	경찰관직무집행법

[출처 : 치안정책연구소]

“미, 응급실에 경찰 상주...폭력 징후땀 체포  
영, 소리만 질러도 벌금...재범땀 가중처벌“

(2012.6.4 / 조선일보)

- ‘응급실 주폭’ 선진국에선.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면 ‘공공장소에서 음주소란죄’로 강하게 처벌받는다. 환자로 실려왔다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 응급실을 개별 병원의 한 장소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 처함 시민들이 드나드는 ‘공공의 장소’로 보기 때문이다.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은 곧 타인의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응급실 소란 행위에 대해 최대 1000달러(약 118만원)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의사를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단순 소란에서 행패 수위가 올라가면 처벌 수위도 올라간다. 최대 1만달러(약 1189만원)의 벌금 혹은 징역 3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캠벨(28)은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병원직원들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술에 취한 '객기'였지만 그는 징역 3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 중이다. 버렌트(36)는 지난달 31일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질렀다 낭패를 당했다. 그가 때린 사람도, 부순 물건도 없었지만, 버렌트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20파운드(약 3만6000원)와 함께 18개월의 '조건부 선고'를 받았다. 18개월 동안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응급실 소란자에 대해 사후 처벌도 강화하지만 아예 응급실 난동을 못 부리도록 사전 봉쇄에도 철저하다. 미국은 응급실에 병원담당 경찰을 상주시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거나 폭력 징후를 보이면 즉각 체포와 격리가 가능하다. 안전요원만 있는 병원에서도 술 취한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갑을 채울 수 있다.

호주에서도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키면 술이 깨 정신을 차릴 때까지 경찰서나 복지센터에 구금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서는 응급실을 포함해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한 것이 네 번 발각될 경우 그 자리에서 480달러(약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 5. '주폭'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

- 주취자의 문제는 ▲범법행위 처벌 등의 사법적 측면과 ▲치료·재활, 복지 등 후생적 측면의 두가지 성격이 있는데, 현재 경찰은 사법적 처리만을 우선하고 인권보호 및 치료·재활에는 무관심함
- 서울지방경찰청은 주폭단속을 위해 '구속수사'에만 집중한 나머지 구속된 사람 중 알코올 중독자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는 등 이들의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음
- 혜화경찰서는 지난 6월 19일 전과 94범의 어 모씨(58, 무직)를 업무방해, 사기로 구속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그는 형사 처벌을 받는 동안 단 한번도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
- 경찰의 주취자 보호·관리와 관련한 법적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찾을 수 있음.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주취자를 위한 보호조치 규정,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등)

-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 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 (1) 주폭 재범을 예방하는 치료프로그램 필요

- 주취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이 5대 폭력의 하나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구속된 기간에는 술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재활치료 효과도 빠를 것”이라고 발언한바 있으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와 다름
- 이소희 국립의료원 정신과 과장은 알코올 중독으로 뇌손상이 진행된 ‘주폭’이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사회에 나오면 반드시 다시 술에 손을 댄다는 점을 지적하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치료해야 한다”며 “폭력 등을 행사하는 ‘주폭’에겐 처벌이 필요하지만 재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절실하다”고 강조
- 최삼욱 을지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주폭’은 최소 두세달 동안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1년 이상 술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주폭은 과음과 폭음으로 일시적 행동조절문제가 발생하고 지속적 음주로 감정조절능력이 저하된다”며 “충분한 치료동기를 갖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다른 만성질환처럼 재발한다”고 언급
- [사례1.] ‘별’을 몇십 개 달고도 여전히 동네에서 행패를 부리는 ‘주폭’은 부지기수다. 서대문구 일대를 주름잡는 전과 49범 ‘주폭’ 송모씨(63)는 술에 취해 동네주민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처벌을 받았지만 감

옥을 나오면 다시 술을 입에 댔다. 송씨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경찰서를 오가며 별만 늘리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지난 10일 구속된 송씨 등 주폭 4명이 보유한 전과는 최소 6범에서 최고 64범에 달했다.

- [사례2.] 부산지방경찰청은 2009년 7월부터 부산시의사회, 부산시, 지역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습 주취소란자 치료·보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당시 3개월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상습 주취소란자의 발생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7월 92명, 8월 82명, 9월 50명으로서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월평균 75명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시범실시 이전인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상습 주취소란자의 월평균 발생은 92명으로서 시범실시 이후 월평균 17명이 줄어든 것임
- 동시에 상습 주취소란자 224명 중 20명은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들 중 알코올의존성 정신질환을 겪는 10명은 정신전문병원에 입원해 알코올중독을 치료했음.

### [프로그램 참여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경찰	① 이송대상자 선정/동의서 작성, ② 119구급대 합동 부산의료원 이송, ③ 부산의료원 합동 주취자 보호(주취자 난동시 제압), ④ 주취해소 후(보호자 또는 자치단체 인계, 본인(보호자) 동의시 전문의 진료)
119구급대	① 주취자 응급치료 필요 여부 판단, ② 경찰 합동 대상자 이송
부산의료원	① 대상자에 대한 의학적 처방 실시(동의), ② 응급실 내 별도 공간 마련(CCTV 카메라 설치, 자해방지용 시설 설치), ③

	대상자 난동시 경찰과 합동 제압, ④ 주취해소 후 전문의 진료 및 입원 수속
부산광역시	① 진료비 미수금 보전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 ② 행려환자 및 기초 생활수급대상자 등록 등 국가부담 조치
부산시의사회	① 응급증상 및 정신질환 판단 기준 마련 협조, ② 제도 추진 정당성 의료계 홍보
시민단체 (변호사)	① 제도상 문제점 및 인권침해 요소 검토, ② 알코올로 인한 피해와 대책 마련의 시급성 등 대시민 홍보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① 알코올중독 치료프로그램 상담 실시, ② 알코올중독 사례 관리

- 주폭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치료’와 ‘단속’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단속에만 치우치고 있는 경향이 큼. 따라서 ‘의무치료명령제도’와 같은 조기 치료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범법자에게 관대했던 현행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의무치료명령제 : 주취자가 폭력이나 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률적인 처분과 함께 치료를 강제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서 활발히 시행 중이며 법원에서 판사가 형량을 선고할 때 알코올 중독 치료에 대한 명령도 함께 내리게 됨
-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이 주취자 보호·치료를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취자 One Stop 응급의료센터」의 확대가 필요할 것임
- 지난 2011년 12월 16일 지방청 생활질서과가 주관해 9개시 지역경찰 1,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의료센터 운영이 주취자 처리’ 설문조사에서 ‘도움이 된다’가 43%, ‘안된다’가 23%로 나타났음
- 동시에 서울지방경찰청만이 아닌 경찰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알코올 중독이 야기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해결하

려는 접근방법이 필요함.

- 그러나 한국 유일의 공공 음주 연구 및 치료의 중심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 등 정부의 음주정책은 즉흥적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재단)에 사업비를 지급하던 한국주류산업협회가 2010년 말부터 지원을 중단, 10월이면 재원이 모두 소진될 예정
- 선진국의 경우 보건복지부내 알코올중독분야를 전담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들여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2) 주취자 응급구호체계 개선시급

- 주취자 응급구호는 경찰과 119구급대 및 병원의 공조가 필요한데, 주로 경찰이 수행하는 등 유기적 협조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
- 경찰은 의료적 판단이 어렵고, 119구급대는 주취자 폭행 등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흡하며, 병원은 주취자 난동시 제재가 불가함
- 미국, 독일,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은 주취 소란자를 위해 의료기관이 별도의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찰서에 있던 주취자안정실을 관리상 어려움을 이유로 2010년 12월 폐지했음
- 복합적인 주취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 단독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소방 및 의료기관등의 유관기관이 연계한 공조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임

-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주취자의 응급의료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은 주취자의 폭행과 난동에 대비해 신변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경찰은 구급차에 동승하여 119구급대와 함께 주취자를 병원후송하고 주취 해소시까지 병원에 상주해 주취자의 상태를 감시할 필요가 있음
  - 부산의 소방서에서 구급대원이 2009. 1. 13 주취자 이송 중 주취자에게 10여 차례 폭행당하여 뇌진탕 3주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음
- 경찰이 병원에 대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병원과 지구대간에 비상연락망을 설치해 즉각적인 출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병원 의료진은 경찰과 함께 주취자를 합동 치료·보호하고, 응급실 내 주취자 보호를 위한 별도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독일은 주취자를 발견하면 경찰과 응급구호기관이 동시에 현장에 출동하고, 미국은 병원후송시 파견경찰관 5명이 병원에 상주하며 주취자를 감시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
- 따라서 경찰과 119구급대는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주취자 발견시 동시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과 지구대간 비상연락망을 설치 및 응급실내 주취자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등 보호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주취문제를 해결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책임을 경찰에게만 지워서는 안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보건복지부 및 시민단체 등이 함께 나서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통합적 컨트롤타워의 설립이 시급함.

- 마지막으로 경찰은 '주폭'의 주요 원인인 '알코올 중독'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못하고 '구속수사'로만 일관한다면 '주폭' 근절은 결국 '허공의 메아리'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